

[붙임] 원광보건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문

1.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제28조(학부장 및 학과장)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항이동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② 단위학과의 편제정원이 500명이상인 경우 학과장을 2명 둘 수 있으며 교무업무와 산학협력업무를 구분하여 그 역할을 부여하며 교무업무 담당 학과장을 대표 학과장으로 한다.”

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제28조(학부장 및 학과장) ① 우리대학의 학부와 학과의 학사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학부장과 학과장을 둔다. <항신설> ② 학부장은 사무분장규정 제27조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. ③ 학과장은 사무분장규정 제26조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.	제28조(학부장 및 학과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단위학과의 편제정원이 500명이상인 경우 학과장을 2명 둘 수 있으며 교무업무와 산학협력업무를 구분하여 그 역할을 부여하며 교무업무 담당 학과장을 대표 학과장으로 한다. ③ 학부장은 사무분장규정 제27조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.<항이동> ④ 학과장은 사무분장규정 제26조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.<항이동>
	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끝.